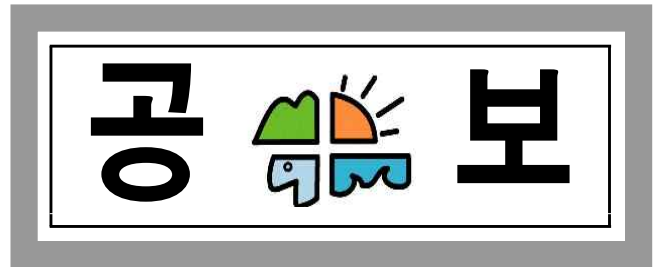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737호 2012년 11월 28일(수)

공 고

-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 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회 란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부과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2012년도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체납독촉장을 고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11. 28. ~ 2012. 12. 17.(20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성 명	주 소	내 용	체납액(원)	송달불능사유
김재성	속초시 변영로 170(영랑동), 동진오피스텔 61*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2012년도분) 납부독촉	194,010	수취인부재
김철이	속초시 조양로 145 - *(조양동)	"	2,495,700	수취인부재
김정식	속초시 미시령로 3337번길 7, 103동 10*호(교동, 늘푸른아파트)	"	497,950	수취인부재
김종임	속초시 미시령로 3359번길 4, 203동 90*호(교동, 현대2차아파트)	"	1,194,280	수취인부재

4. 기타사항

공고기간 내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규정에 의거 체납대상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재산압류 및 강제징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 시청 도시디자인과(☎033-639-2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1. 28.

속 초 시 장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 (명칭)	(☎)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성명 : (인), 연락처 속초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건축지도담당
- 연 락 처 : 033) 639-2457

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농촌 고령화와 농업시장 개방(FTA) 등 농업경쟁력 약화로 노후 농기계 수리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농기계 기종의 대형화 및 공급량 증가에 따른 농가 수리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 대형 농기계 무상수리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농기계 수리를 위한 부품대금 부담 기준을 소형과 대형으로 나누어 부품대금을 차등하여 징수하고자 함(안 제5조).
 - － 소형은 부품비가 10만원 이하는 징수하지 않고,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함.
 - － 대형은 부품비가 30만원 이하는 징수하지 않고,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함.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기술보급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60/ 속초시 동해대로 4243(교동 979)

속초시청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담당

(전화: 033-633-2519, FAX: 033-631-6161, Eail: jaemee14@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박영철(전화:033-639-29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을 “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속초시 농기계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를 “속초시 농기계수리소”라 하고, “관하여”를 삭제한다.

제2조 중 “수리소”를 “속초시 농기계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연부락”를 “자연마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품대금) ①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타이어 등 소모품 포함)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1. 소형농기계는 농기계 기종별로 한 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2. 대형농기계는 농기계 기종별 한 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단, 부품대금 지원 혜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농기계 기종별로 한 대당 연간 3회로 제한하며, 자가 영농에 이용되는 농기계에 한한다.

② 제1항제2호의 대형농기계란 농용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베일러를 말한다.

제7조 중 “관하여”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u>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u> (이하 "수리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u>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u>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수리소는 속초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2조(설치) ① <u>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u> (이하 "수리소"라 한다)는 속초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기능) ①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부속품대체,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업무 추진시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②농기계수리는 동 <u>자연부락단위의 순회수리</u> 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부속품대체, <u>그 밖에</u>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업무 추진시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② 농기계수리는 동 <u>자연마을단위의 순회수리</u> 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부품대금)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제5조(부품대금) ①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u>부품대금(타이어 등 소모품 포함)</u> 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1. 소형농기계는 농기계 기종별로 한 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2. 대형농기계는 농기계 기종별 한 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단, 부품대금 지원 혜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농기계 기종별로 한 대당 연간 3회로 제한하며, 자가 영농에 이용되는 농기계에 한한다.

	② 제1항제2호의 대형농기계란 농용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베일러를 말한다.
제7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